

## Ⅱ.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 시 차 입 한 도 액
합 계	10,917,783,497	327,530,000
○ 일 반 회 계	9,790,110,258	293,703,000
○ 기 타 특 별 회 계	1,127,673,239	33,827,000
▪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680,356,633	20,410,000
▪ 팔당호관리 특별회계	5,273,614	158,000
▪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	30,248,245	907,000
▪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	186,933,190	5,607,000
▪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	223,751,557	6,712,000
▪ 임진강댐 주변정비 특별회계	1,110,000	33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「세입·세출예산」과 같다.

제 3 조 200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「계속비사업조서」와 같다.

제 5 조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「명시이월사업조서」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,982,34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  
- 인건비, 반환금 기타, 지방채 상환 원·리금

제 8 조 금회 추경 승인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 사업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.

※ 세입·세출예산 총괄표의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을 사사오입하여 구분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